

제1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6,561,805,000	328,090,250
일반회계	5,528,000,000	276,400,000
특별회계	1,033,805,000	51,690,250
공기업특별회계	450,000,000	22,500,000
지역개발기금운영	450,000,000	22,500,000
기타특별회계	583,805,000	29,190,250
의료급여기금운영	470,602,000	23,530,100
치수사업	39,960,000	1,998,000
경북도립대학	9,120,000	456,000
광역교통시설	10,313,000	515,65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298,000	2,564,900
학교용지부담금	2,512,000	125,6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090,000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